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39호 2011. 8. 8.(월)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19호 2011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8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819호

## 2011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가격공시 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랐

- 기 간 : 2011년 8월 3일 ~ 8월 23일(21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  
※ 방문 열람은 서구청 세무과
- 내 용 :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 □ 의 견 제 출

- 기 간 : 2011년 8월 3일 ~ 8월 23일(21일간)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방 법
  - 인터넷접수 :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
  - 일 반 접 수 : 서구청 세무과 방문 및 우편 · FAX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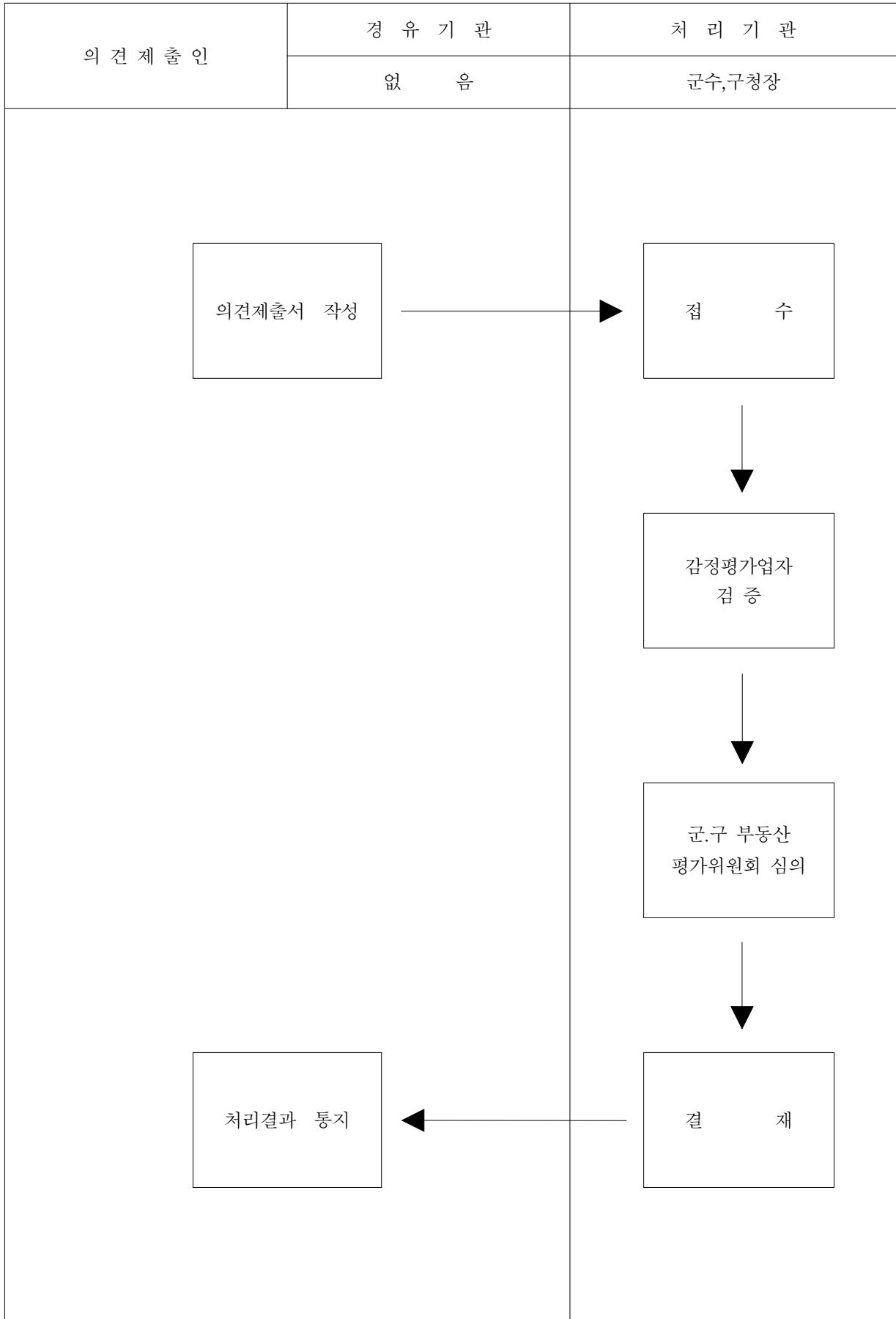
### □ 의견 제출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이 의견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8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징계부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개정('10. 6. 15.)됨에 따라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 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며,
- 다.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신설(별표 1의4)
- 나. 성매매 징계기준 마련(별표 1 제7호 다. 성희롱)
- 나. 청렴의 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강화(별표 1의 2, 별

표 1의3)

다. 그 밖의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 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32-560-4102, FAX : 032-560-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징계양정”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으로 하고,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을 “금품·향응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 외의 본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의 각 호 외의 본문 중 “①구청장은”을 “징계의결등 요구권 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일사건에”를 “같은 사건에”로 하고,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를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으로 하며,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어느하나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징계의결서”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

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 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情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징 계 기 준 ( 제 2 조 관 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2]

##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제7조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능동)		○				
	6) 300만원 이상(수동·능동)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능동)		○				
	4) 100만원 이상(수동·능동)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수동)	○					

※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

[별표 1의3]

## 음주운전사건 처리 기준(제7조 관련)

연번	유 형 별	양정기준	비 고
1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이 포함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3개월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견책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은 경우 또는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감봉 2개월	
5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3개월	
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감봉 3개월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정직 이상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정직 이상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2회와 정지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정직 이상	
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3회 받은 경우 또는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 4회 이상 받은 경우	강등 이상	
11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정직 이상	
12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이상	
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이상	

[별표 1의4]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p>※ 비교</p> <p>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p>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